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정희 의원 외 5인

2. 제안이유

- 노상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택가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보조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보조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21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주택가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노상주차장 설치 규정의 완화를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안 제11조제4항)에 대해 규정하고, 최근 자재비 인상에 따른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¹⁾의 보조금 한도의 상향으로 사업의 활성화와 거주지 내 주차공간의 확보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7~2023년 동안 사업 신청 건수가 없는 등(참고자료 기재) 사업의 참여율이 낮았으므로, 집행부서에서는 사업의 철저한 홍보와 절차 안내 등으로 사업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 기존 주택의 담장, 대문 등의 철거로 집안주차장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 참고사항

○ 연도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주차면수	집행액	구분	건수	주차면수	집행액
계	28	53	52,380				
2008	10	19	18,700	2013	2	3	3,080
2009	6	14	12,600	2014	-	-	-
2010	2	6	5,000	2015	-	-	-
2011	2	6	5,000	2016	2	3	3,500
2012	4	5	4,500	2024	2	4	4,000

※ 사업추진 : 2017년~2023년 신청건수 없음

○ 타지자체 사례

(단위 : 천원)

구분	조례 유무	예산액	사업내용	비고
대구	○	100,000	설치비용 80% 지원 (1면당 최대 300만원)	- 시 50% - 구·군 50%
영주	○	26,000	설치비용 50% 지원 (1면당 최대 300만원)	
상주	○	6,000	설치비용 50% 지원 (1면당 최대 300만원)	
※ 조례 제정 후 미시행 : 포항, 김천, 안동, 의성, 청도				